

수신 :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제위

제목 : 윤리경영 협조 요청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사(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正道經營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업 풍토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또는 협력업체와는 공동운명체라는 마음자세로 건전한 거래관행을 유지하며 相互共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윤리경영』은 임직원 비리 방지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형식이나 체면보다는 내실을 도모하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인사치레를 지양해 가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 회사는 이러한 『윤리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귀사와의 투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회사와의 도박 및 금전거래, 향응수수, 회식, 접대비용, 골프접대, 협찬 받는 행위, 과도한 선물의 제공, 과도한 경조사비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여러분께서 당사의 이러한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시어 투명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상회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귀사와의 돈독한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올 한해 귀사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동국S&C 대표이사 정학근 배상

협력회사 윤리규범

제 1 장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의 적용은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3. 규범의 운영

3.1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국S&C 지원관리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3.2 협력회사 대표자 혹은 동국S&C와의 거래에 대한 실무책임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윤리규범을 포함한 동국S&C의 일체의 윤리 경영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2 장 직무수행 자세

4. 직무수행 자세

4.1 협력회사 임직원은 동국S&C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4.2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동국S&C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거래관계의 투명성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6. 금지사항

6.1 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동국S&C 임직원,

가족 또는 임직원과 관련된 제3자에게 다음사항을 제안, 제공, 약속할 수 없다.

- 6.1.1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6.1.2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6.1.3 출장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6.1.4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6.1.5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 6.1.6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 3 장 규정 위반의 처리

7. 위반사항의 신고

- 7.1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국S&C 지원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7.2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8. 위반사항의 처리

- 8.1 동국S&C 지원관리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회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재발방지 촉구, 일정기간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8.2 협력회사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제 4 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9년 07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보 처리 원칙

1. 처리 원칙

- 1)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2)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처리 되지 않습니다.
- 4)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 5) 고객불만사항은 고객 불만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보 유형

- 1) 향응 접대 수수 행위
- 2) 금품(금전, 선물)수수행위
- 3) 불공정 거래 행위
- 4) 차별(부당)행위
- 5)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 6) 비윤리 불법 행위

3. 처리 절차

- 1) E-mail, 전화,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향후 홈페이지 사이버 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 2) 제보 내용에 감사팀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제보인에게 E-mail로 통보를 드리며, 사이버 제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3)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자 보호 원칙

저희 동국 S&C는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한 기업,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1. 제보자 보호 주체에 대한 기준

- 1) 회사의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원 및 전 종업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제보 및 내부고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 2) 윤리경영 사안에 대한 신고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주체는 회사의 윤리경영위원회이다. 회사의 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기준

- 1) 회사의 임원 및 전 종업원은 회사의 내부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저촉이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윤리경영위원회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3.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

- 1)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2)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3)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입증책임 및 면제에 대한 기준

- 1)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동 내용을 신고·제보·내부 고발하는 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2)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다.
- 3)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위원회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4) 회사의 전 임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 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